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388호(號) 1928(昭和 3)년 4월 18일 수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50호(號)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사설철도(私設鐵道) 및 항로(航路) 간(間) 화물연대운송규칙(貨物連帶運送規則)을 1928(昭和 3)년 5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본(本) 규칙(規則) 시행(施行)과 동시(同時)에 아래[左]의 규칙(規則)은 이것을 폐지(廢止)함.

1925(大正 14)년 고시(告示) 제364(號) 조선총독부철도국(朝鮮總督府鐵道局) 연락하물운송규칙(聯絡荷物運送規則) 조선기선주식회사(朝鮮汽船株式會社)

1926(大正 15)년 고시(告示) 제98(號)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연락하물운송규칙(聯絡荷物運送規則)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

1926(大正 15)년 고시(告示) 제99(號)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연락하물운송규칙(聯絡荷物運送規則)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頭端株式會社)

1926(大正 15)년 고시(告示) 제100(號)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연락하물운송규칙(聯絡荷物運送規則) 사위어머형제상회(澤川兄弟商會)

1925(大正 14)년 고시(告示) 제65(號)에 의하여 준용(準用)된 하기[左記] 규칙(規則) 기(記)

1923(大正 12)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4호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연락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聯絡旅客及荷物運送規則)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

1923(大正 12)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4호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연락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聯絡旅客及荷物運送規則) 조선철도주식회사(朝鮮鐵道株式會社)

1925(大正 14)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4호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연락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聯絡旅客及荷物運送規則) 금강산전기주식회사(金剛山電氣株式會社)

1925(大正 14)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4호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경성철도국 연락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京城鐵道局 聯絡旅客及荷物運送規則) 개천경편철도(价川輕便鐵道)

1928(昭和 3)년 4월 18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사설철도(私設鐵道) 및 항로(航路) 간(間) 화물연대 운송규칙(貨物連帶運送規則)

제1조(條)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와 사설철도(私設鐵道) 또는 항로(航路)와 화물(貨物)의 연대운송(連帶運送)을 할 경우에는 본(本) 규칙(規則)에 의(依)함.

전항(前項)에 의한 연대운송(連帶運送)의 범위(範圍)는 별표(別表)와 같이 함.

제2조(條) 급종별(扱種別)은 각(各) 운수기관(運輸機關)을 통(通)하여 동일(同一)한 것에 의

(依)함. 단(但) 광궤선(廣軌線)과 협궤선(狹軌線) 또는 항로(航路)와 연대운송(連帶運送)한 경우는 이 한(限)에 부재(不在)함.

제3조(條) 운임(運賃) 및 요금(料金)은 각(各)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마다 그 정(定)한 것에 의하여 산출(算出)하여 이것을 병산(併算)함.

할증임금(增賃金)은 각(各) 철도의 영업(營業) 마일 수[哩程·mileage]를 통산(通算)하고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가 정(定)한 것에 의하여 이것을 산출(算出)함.

(주[註]1)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鐵道) 경유(經由) 조선철도주식회사선(朝鮮鐵道株式會社線) 상호간(相互間) 연대(連帶)한 경우는 1전(錢) 미만(未滿)의 단수(端數)는 각(各) 선(線) 각각 별도(別途)로 이것을 절사(切捨)함으로 함.

(주[註]2) 제2항(項)의 영업(營業) 마일 수[哩程·mileage]란 여객 및 소하물(小荷物) 영업 마일수[哩程·mileage]를 말함.

제4조(條)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화물(貨物)은 관계운수기관(關係運輸機關)에서 특히 승인(承認)한 경우에만 그 운송(運送)을 인수(引受)함.

1 광궤선(廣軌線) 간(間)

가 소화물급(小貨物扱)에 있어서는 1개(箇)의 길이[長] 18척(尺), 중량(重量) 3(噸·ton) 또는 용적(容積) 3백(百) 입방척(立方尺)을, 차급(車扱)에 있어서는 1개(箇)의 길이[長] 68척, 중량(重量) 30톤(噸·ton) 또는 용적(容積) 천팔백(千八百) 입방척(立方尺)을 초과(超過)한 것

나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가 정(定)한 급외품(級外品: 제1종[種] 화약류[火藥類] 중[中] 갑[甲] 및을[乙], 제2종[種] 위험품[危險品] 및 제3종[種] 가축[家畜]을 제[除]함) 다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제25조(條)제2항(項)의 적재 제한(積載制限)을 초과(超過)한 것

라 열차(列車)를 지정(指定)하거나 또는 임시열차(臨時列車)로 운송(運送)하는 화물(貨物)

2 협궤선(狹軌線)과 협궤선(狹軌線) 또는 광궤선(廣軌線) 간(間)

가 소화물급(小貨物扱)에 있어서는 1개(箇)의 길이[長] 14척, 중량(重量) 1톤(噸·ton) 또는 용적(容積) 백(百) 입방척(立方尺)을, 차급(車扱: 광궤선[廣軌線] 내[內]를 소화물급으로 연대[連帶]한 것을 포함[包含]함)에 있어서는 1개(箇)의 길이[長] 30척(尺: 광궤선[廣軌線] 내[內]를 소화물급으로 연대[連帶]하는 것은 18척[尺]), 중량(重量) 3톤(噸·ton) 또는 용적(容積) 3백(百) 입방척(立方尺)을 초과(超過)한 것

나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가 정(定)한 급외품(級外品: 제2종[種] 위험품[危險品] 및 제3종[種] 가축[家畜]을 제[除]함)

다 열차(列車)를 지정(指定)하거나 또는 임시열차(臨時列車)로 운송(運送)하는 화물(貨物)

3 철도, 항로 간

가 조선연안항로(朝鮮沿岸航路)에 있어서는 1개(箇)의 길이[長] 14척(尺), 중량(重量) 3백(百) 근(斤) 또는 용적(容積) 20입방척(立方尺)을 초과(超過)한 것, 기타(其他)에 있어서는 1개(箇)의 중량(重量) 1톤(噸·ton), 용적(容積) 백(百) 입방척(立方尺) 또는 길이[長]는 소화물급에 있어서는 18척(尺)을(협궤선발[挾軌線發] 또는 착[著]에 있어서는 14척[尺]), 차급(車扱)에 있어서는 30척(尺)을 초과(超過)한 것

나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가 정(定)한 급외품(級外品)

다 열차(列車)를 지정(指定)하거나 또는 임시열차(臨時列車)로 운송(運送)하는 화물(貨物)

라 사와야마형제상회항로[澤山兄弟商會航路], 하카타(博多) 및 나가사키(長崎) 착(著)에 있어서는 목재(木材), 콩깻묵[豆粕], 쌀[米], 대두(大豆) 및 소두(小豆) 이외(以外)의 화물(貨物) 또 시모노세키(下關), 모지(門司) 및 고쿠라(小倉) 착(著)에 있어서는 목재 및 콩깻묵[두박] 이외의 화물

제5조(條) 조선총독부철도선(朝鮮總督府鐵道線) 내(內)를 차(車扱)으로 연대(連帶)하는 화물(貨物: 사설철도[私設鐵道] 광궤선발[廣軌線發]의 것을 제[除]함)의 1구(口)는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톤수(噸數)에 대한 동(同) 선(線) 내(內) 운임(運賃)을 지불(支拂)한 것에 한(限)함. 단(但) 1구(口)의 용적(容積)은 천팔백(千八百) 입방척(立方尺: 도문철도주식회사선 및 조선철도주식회사 함북선발에 있어서는 천오백 입방척)을 한도(限度)로 함.

조선총독부철도가 정한 화물 등급표 중 표준화차(標準貨車: 도문선 및 조철 함북선 발에 있어 운임계산 최저톤수의 기입이 유(有)한 것 동 기제가 무(無)한 것

서는 소형화차에 대한 운임계산 최저톤수 이상 30톤까지
26톤(噸·ton) 이상 30톤(噸·ton)까지

제6조(條) 사설철도(私設鐵道) 협궤선(挾軌線) 내(內)를 차급(車扱)으로 연대(連帶)하는 화물(貨物)의 1구(口)는 5톤(噸·ton), 10톤(噸·ton), 15톤(噸·ton), 20톤(噸·ton), 25톤(噸·ton), 30톤(噸·ton: 조선철도주식회사 함북선에 있어서는 10톤, 20톤, 30톤)에 대한 동(同) 선(線) 내(內) 운임(運賃)을 지불(支拂)한 것에 한(限)함

제7조(條)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가 정(定)한 급외품(級外品) 제1종(種) 화약류(火藥類) 또는 급외품(級外品) 제2종(種) 위험품(危險品)을 다른 품명(品名)에 의하여 탁송(託送)한 경우에 부가(附加)함이 가(可)한 할증운임[增運賃]은 각(各) 철도 각각 별도(別途)로 이것을 계산(計算)하지 아니하고 모두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제88조(條)의 규정(規定)에 의(依)함.

제8조(條) 화주(貨主)의 청구(請求)가 유(有)한 때는 항로발(航路發)의 경우는 연대화물상환증(連帶貨物相換證)을, 철도발(鐵道發)의 경우는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발행(發行)함. 이 경우에는 선하증권(船荷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함.

제9조(條) 연대운송(連帶運送)에 관계된 화물(貨物)에 관한 손해(損害)에 대하여는 관계운수기관(關係運輸機關)은 연대(連帶)하여 배상(賠償)의 책임(責任)을 지지 아니함.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최고액(最高額)은 손해(損害)의 원인(原因)을 야기(惹起)한 장소(場所)가 속(屬)한 철도 또는 항로가 정(定)한 것에 의(依)함. 단 손해의 원인을 야기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액(額)의 큰 것에 의(依)함.

제10조(條)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제7조(條), 제12조(條), 제13조(條), 제15조(條)부터 제17조(條)까지, 제20조(條), 제21조(條), 제23조(條)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條), 제33조(條), 제35조(條), 제40조(條), 제41조(條), 제36조(條), 제76조(條)부터 제78조(條)까지 및 제84(條)조부터 제91조(條)까지의 규정(規定)은 연대운송(連帶運送)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제11조(條) 각(各) 운수기관(運輸機關)에 있어서 운송(運送)에 관한 제규칙(諸規則)은 본(本) 규칙(規則)에 저촉(抵觸)하지 아니하는 한 연대운송(連帶運送)에 대하여 각(各) 그 소관(所管) 내(內)의 운송(運送)에 효력을 가짐.

(별표[別表])

연대운송(連帶運送)의 범위(範圍): 본[本] 표[表]에서 국[局]이란 조선총독부 철도국[朝鮮總督府鐵道局]을, 사[社]란 국[局]을 제[除]한 철도 또는 항로의 영업자물, 역[驛]이란 간이역[簡易驛] 및 정류장[停留場]을 제[除]한 역[驛], 하급소[荷扱所]를, 선[線]이란 철도 및 항로를 말함

철도(鐵道), 항로(航路) 명(名)	접속역(接續驛)	취급구역(取扱區域: 접속역에서는 당해[當該] 철도 또는 항로와의 연대운임[連帶運賃]을 하지 아니함)	특종취급사항(特種取扱事項)
(1)조선철도주식회사(朝鮮鐵道株式會社)	김천(金泉)	1 국선(局線) 각(各) 역(驛): 함경북부선[咸鏡北部線] 및 청진선[淸津線] 각 역을 제[除]함과 사선(社線) 각 역(驛)을 제[除]한 역(驛) 간(間)	
경북선(慶北線: 광궤[廣軌])	조치원(鳥致院)	2 국함경북부선(局咸鏡北部線) 및 청진선 각 역과 사함북선(社咸北線) 각 역 간(間)	
충북선(忠北線: 광궤[廣軌])	마산(馬山)	3 국선(局線) 경유 사선(社線) 각 역 간(間)	
경남선(慶南線: 광궤[廣軌])	대구(大邱)	4 국선(局線) 경유 사설철도선(私設鐵道線) 각 역 간(間)	
경동선(慶東線: 협궤[狹軌])	사리원(沙里院)	5 국선(局線) 경유 사선(社線) 각 역(驛)을 제[除]함과 사와야마항로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오노미치(尾島), 하카타(博多) 및 효고(兵庫: 오노미치 및 하카타는 도착에 한함) 간(間)	
황해선(黃海線: 협궤[狹軌])	함흥(咸興)		
함남선(咸南線: 협궤[狹軌])	고무산(古茂山)		
함북선(咸北線: 협궤[狹軌])			
(2)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 광궤[廣軌])	천안(天安)	1 국선(局線) 각 역(驛)을 제[除]함과 사선(社線) 각 역 간(間)	
		2 국(局) 경유 사설철도선(私設鐵道線) 각 역 간	
(3)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 광궤[廣軌])	철원(鐵原)	(2)와 동일함	
(4)개천철도주식회사(价川鐵道株式會社: 협궤[狹軌])	신안주(新安州)	(2)와 동일함	
(5)도문철도주식회사(圖們鐵道株式會社: 협궤[狹軌])	회령(會寧)	1 국함경북부선(局咸鏡北部線) 및 청진선(淸津線) 각 역과 사선(社線) 각 역 간(間)	당분간(當分間) 운임(運賃) 할증[增] 임금(賃金) 및 요금(料金)은 착불(著拂)의 취급(取扱)을 하지 아니함
		2 국경유 사설철도선 각 역 간	
(6)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		1 국선(局線) 각 역(함경북부선 및 청진선 각 역을 제[除]함과 사선)	1 상하이발(上海發) 증편(增便)에 있어서는 운임(運賃) 할증임금(割增賃金) 및 요금(料金)은 착불(著拂) 취급(取扱)을 하지 아니함 2 상하이 발착(發著)을 제(除)하고 부대비(附帶費)의 착불(著拂) 및 조선연안항로(朝鮮沿岸航路)에 만포장비(包裝費), 적재비(積載費) 및 취급수수료(取扱手數料)의 입체물(立替拂)을 함
	부산(釜山)	장생포(長生浦), 방어진(方魚津), 감포(甘浦), 구룡포(九龍浦), 포항(浦港), 영덕(盈德), 죽변(竹邊), 영해(寧海), 평해(平海), 삼척(三陟), 강릉(江陵), 양양(襄陽), 우성(杆城), 장전(長鎭), 고저(庫底), 차호(遮湖), 신창(新昌), 단천(端川), 성진(城津), 어대진(漁大津), 독진(獨津), 청진(淸津), 웅기(雄基), 울릉도(鬱陵島), 거문도(巨文島), 김녕(金寧), 제천(濟川), 한림(翰林), 모슬포(慕瑟浦), 서귀포(西歸浦), 표선리(表善里), 조천(朝天), 성산포(城山浦), 청도(靑島)	
	목포(木浦)	줄포(苧浦), 법성포(法聖浦), 제주(濟州), 한림(翰林), 조천(朝天), 김녕(金寧), 성산포(城山浦), 표선리(表善里), 모슬포(慕瑟浦), 서귀포(西歸浦), 청도(靑島), 상하이(上海)	
	군산(群山)	구도(舊島), 안흥(安興), 오천(鰲川), 줄포(苧浦), 법성포(法聖浦), 청도(靑島), 상하이(上海)	
	인천(仁川)	구도(舊島), 안흥(安興), 오천(鰲川), 강화도(江華島), 교동도(喬桐島), 용호도(龍湖島), 웅진(瓮津), 호포(湖浦), 구미포(九味浦), 해주(海州), 덕동(德洞), 몽금포(夢金浦), 지부(芝罘), 다롄(大連), 청도(靑島), 상하이(上海)	
진남포(鎭南浦)	몽금포(夢金浦), 덕동(德洞), 구미포(九味浦), 조포(潮浦), 웅진(瓮津), 용호도(龍湖島), 제주(濟州), 지부(芝罘), 청도(靑島), 상하이(上海)		

	서호진(西湖津) 신 포(新浦)	신창(新昌), 차호(遮湖), 단천(端川), 성진(城津), 어대진(漁大津), 독진(獨津), 청진(淸津), 웅기(雄基)	
	원 산(元山)	신창(新昌), 차호(遮湖), 단천(端川), 성진(城津), 어대진(漁大津), 독진(獨津), 청진(淸津), 웅기(雄基), 블라디보스토크[浦蘆斯德·Vladivostok], 장전(長箭), 우성(杆城), 양양(襄陽), 강릉(江陵), 삼척(三陟), 죽변(竹邊), 평해(平海), 영해(寧海), 영덕(盈德), 포항(浦港), 고저(庫底), 구룡진(九龍津), 감포(甘浦), 방어진(方魚津), 장생포(長生浦), 쓰루가(敦賀), 미야즈(宮津), 마이즈루(舞鶴) 간(間)	
		2 국함경북부선(局咸鏡北部線) 각 역과 사선(社線)	
	청 진(淸津)	웅기(雄基), 독진(獨津), 어대진(漁大津), 성진(城津), 단천(端川), 차호(遮湖), 신창(新昌), 신포(新浦), 원산(元山), 쓰루가(敦賀), 미야즈(宮津), 마이즈루(舞鶴) 간(間)	
	원 산(元山)	3 사선(社線) 청진(淸津), 원산(元山) 간 또는 청진(淸津), 서호진(西湖津) 간 경우 국함경북부선(局咸鏡北部線) 각 역과 기타의 국선(局線) 각 역 간(間)	
	소호진(西湖津)	4 국선(局線) 원산(元山), 인천(仁川) 간(間) 경우 사선(社線) 블라디보스토크[浦蘆斯德·Vladivostok], 웅기(雄基), 청진(淸津), 성진(城津), 쓰루가(敦賀), 미야즈(宮津), 마이즈루(舞鶴)과 지부(芝罘), 다롄(大連), 청도(靑島), 상하이(上海) 간(間)	
	청 진(淸津)	5 사시모노세키(下關), 모지(門司), 오사카(大阪), 고베(神戸)와 국선(局線)	
	목 포(木浦)	장성(長城), 송정리(松汀里), 나주(羅州), 영산포(榮山浦), 학교(鶴橋)	
	군 산(群山)	대전(大田), 논산(論山), 강경(江景), 이리(裡里), 김제(金堤), 신태인(新泰仁), 정읍(井邑)	
	인 천(仁川)	조치원(鳥致院), 천안(天安), 수원(水原), 용산(龍山), 경성(京城), 개성(開城), 신막(新幕), 사리원(沙里院), 평양(平壤), 단동(安東), 겸이포(兼二浦),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진남포(鎭南浦)	평양(平壤), 사리원(沙里院), 신안주(新安州), 단동(安東), 겸이포(兼二浦),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원 산(元山)	철원(鐵原), 안변(安邊), 고원(高原), 영흥(永興), 문천(文川), 신상(新上), 함흥(咸興)	
	청 진(淸津)	회령(會寧), 나남(羅南) 간(間)	
		1 국선(局線) 각 역(함경북부선 및 청진선 각 역을 제함) 발(發) 사선(社線)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효고(兵庫), 오노미치(尾島), 하카타(博多) 및 나가사키(長崎), 시모노세키(下關), 모지(門司), 고쿠라(小倉) 착(著)	을 득(得)함 3 오사카(大阪) 및 고베(神戸) 발(發)에 대하여는 포장비(包裝費)의 입체불(立替拂)을 함을 득(得)함
		2 사선(社線)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발(發) 국선(局線) 각 역(함경북부선 및 청진선 각 역을 제함) 착(著)	
		3 사선(社線)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시모노세키(下關), 모지(門司)와 국선(局線)	
	목 포(木浦)	학교(鶴橋), 영산포(榮山浦), 나주(羅州), 송정리(松汀里), 장성(長城)	
	군 산(群山)	대전(大田), 논산(論山), 강경(江景), 이리(裡里), 김제(金堤), 신태인(新泰仁), 정읍(井邑)	
	인 천(仁川)	조치원(鳥致院), 천안(天安), 오산(烏山), 수원(水原), 용산(龍山), 경성(京城), 개성(開城), 신막(新幕), 사리원(沙里院), 평양(平壤), 단동(安東), 겸이포(兼二浦),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진남포(鎭南浦)	평양(平壤), 사리원(沙里院), 신안주(新安州), 단동(安東), 겸이포(兼二浦),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부 산(釜山)	4 국선(局線) 경우 사선(社線)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효고(兵庫), 오노미치(尾島), 하카타(博多), 오노미치 및 하카타는 도착에 한[限]함과 조선철도주식회사선 각 역(함북선 각 역을 제함)	부대비(附帶費)의 착불(著拂) 및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발(發)에 대하여는 포장비의 입체불(立替拂)을 함을 득(得)함
(7)사와야마형제상회 [澤山兄弟商會]		사선(社線)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시모노세키(下關), 모지(門司)와 국선(局線)	
	목 포(木浦)	학교(鶴橋), 영산포(榮山浦), 나주(羅州), 송정리(松汀里), 장성(長城)	
	군 산(群山)	대전(大田), 논산(論山), 강경(江景), 이리(裡里), 김제(金堤), 신태인(新泰仁), 정읍(井邑)	
	인 천(仁川)	조치원(鳥致院), 천안(天安), 오산(烏山), 수원(水原), 용산(龍山), 경성(京城), 개성(開城), 신막(新幕), 사리원(沙里院), 평양(平壤), 단동(安東), 겸이포(兼二浦),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원 산(元山)	철원(鐵原), 안변(安邊), 문천(文川), 고원(高原), 영흥(永興), 신상(新上), 함흥(咸興)	
	청 진(淸津)	회령(會寧), 나남(羅南) 간(間)	
(8)오사카상선주식회사 [大阪商船株式會社]		사선(社線)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시모노세키(下關), 모지(門司)와 국선(局線)	부대비(附帶費)의 착불과 오사카 및 고베 발에 대하여는 포장비의 입체불을 함을 득함
	목 포(木浦)	학교(鶴橋), 영산포(榮山浦), 나주(羅州), 송정리(松汀里), 장성(長城)	
	군 산(群山)	대전(大田), 논산(論山), 강경(江景), 이리(裡里), 김제(金堤), 신태인(新泰仁), 정읍(井邑)	
	인 천(仁川)	조치원(鳥致院), 천안(天安), 수원(水原), 용산(龍山), 경성(京城), 개성(開城), 신막(新幕), 사리원(沙里院), 평양(平壤), 단동(安東), 겸이포(兼二浦),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원 산(元山)	철원(鐵原), 안변(安邊), 문천(文川), 고원(高原), 영흥(永興), 신상(新上), 함흥(咸興)	
	청 진(淸津)	회령(會寧), 나남(羅南) 간(間)	
(9)아과국공동기선주식회사 [阿波國共同汽船株式會社]		사선(社線) 지부(芝罘), 다롄(大連)과 국선(局線)	
	인 천(仁川)	부산(釜山), 밀양(密陽), 경산(慶山), 대구(大邱), 왜관(倭館), 김천(金泉), 대전(大田), 부강(美江), 조치원(鳥致院), 천안(天安), 평양(平壤), 수원(水原), 영등포(永登浦), 용산(龍山), 경성(京城), 마산(馬山), 개성(開城), 김교(金郊), 한포(汗浦), 신막(新幕), 사리원(沙里院), 황주(黃州), 평양(平壤), 신안주(新安州), 정주(定州), 진남포(鎭南浦),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논산(論山), 강경(江景), 이리(裡里), 송정리(松汀里), 나주(羅州), 목포(木浦), 군산(群山), 철원(鐵原), 원산(元山) 간(間)	부대비(附帶費)의 착불을 함을 득함
(10)조선기선주식회사 [朝鮮汽船株式會社]		국선(局線) 각 역(함경북부선 및 청진선 각 역을 제[除]함)과 사선(社線)	
	부 산(釜山)	통영(統營), 삼천포(三干浦), 남해(南海), 진교(辰橋), 노량진(露梁津), 여수(麗水), 나로도(羅老島), 풍남(豊南: 고흥[高興]), 수문포(水門浦), 완도(莞島)	부대비(附帶費)의 착불과 적체비 및 취급수수료의 입체불을 함을 득(得)함
	목 포(木浦)	완도(莞島), 수문도(水門島), 나로도(羅老島), 풍남(豊南: 고흥[高興]), 여수(麗水), 노량진(露梁津), 진교(辰橋) 간(間)	